

# 18·19세기 탈춤꾼 · 山臺造成匠人 卓文漢 연구

##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ahnhoi@chol.com

- I. 머리말
- II. 卓文漢의 집안과 기예
- III. 탈춤꾼과 匠人으로서의 활동상
- IV. 1784년 갑진년 나례청 사건과 탁문한의 역할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통사회에서 대중 예술가와 장인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고 해도 대부분 익명의 인간으로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는 거장들조차 예술가 또는 기술자로서 이름을 드러낸 사례가 거의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대중 예술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담당자들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의 출신 성분은 특별한 예외적 존재를 빼놓고는 평민이거나 그 이하로서 천민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예술은 즐기되 예술가는 천시하는 풍토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은 회화와 같은 고급 예술의 창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한 실정과 대조를 이룬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그에 따라 교유하는 층도 상류층에 가까웠다. 자연스럽게 고급 예술을 조명한 시와 산문이 적지 않았고, 창작을 담당할 예술가 자체를 조명한 저작도 많을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 들어 대중 예술의 예술성이 향상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 예술 담당자를 보는 시선도 점차 변화를 보였다. 시선의 변화로 대중 예술가를 평가하고 그들의 행적을 묘사한 시문도 등장하였다. 송흥록이나 고수관을 비롯한 판소리 명창을 다룬 시문이 창작되고, 雲心과 같은 劍舞 거장을 묘사한 시문이 여러 편 보이는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것은 예술성이 탁월하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사대부 계층은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할 수 없었고, 점차로 대중 예술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예술성을 낮게 평가받은 대중 예술과 그 담당자는 더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 재담, 사당패놀이, 꼭두각시놀이, 탈춤과 같은 다양한 공연문화를 우호적으로 묘사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담당자를 소개한 어떤 형태의 글도 찾기가 힘들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이고 인기를 얻은 인물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익명의 공연 예술 담당자로 남았다. 자기 존재를 세상에 드러낸 공연 예술가로는 17세기의 배우 朴男<sup>1)</sup>, 18세기의 광대 達文(1707- )<sup>2)</sup>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들은

1) 김중철, 『판소리사 연구』(역사비평사, 1996), 27-31쪽;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태학사, 2002), 489-491쪽; 손태도, 『광대의 가창문화』(집문당, 2003), 396-397쪽.

한 시대에 상하 계층 가릴 것 없이 큰 인기를 누린 인물로서 행적이 상당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다시 적막할 뿐이다.

이 밖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기록자에 의해 간혹 대중 예술가가 그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18세기 전기의 朴萬會를 들 수 있다. 그는 전라도 무안 출신의 줄타기 명인으로 한양에서 활약하다가 고향 무안으로 돌아갔다. 서얼 지식인인 徐宗華가 고향으로 떠나는 그를 배웅하며 다음과 같은 서문을 쓴 것이 남아 있다.

優人 朴萬會는 무안 舟山 사람이다. 내가 司馬試에 합격했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다. 倡優 잡기를 못하는 것이 없지마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줄타기를 잘한다. 뜰의 좌우에 몇 길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나무 끝에 줄 하나를 가로로 걸친다. 그러고서 팔씩 뛰어 줄에 올라타서 앉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며 눕기도 일어나기도 한다. 다리를 꼬고 걸터앉기도 하고 한 발로 서기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춤을 추기도 휘파람을 불기도 젖대를 불기도 한다. 옷을 벗어 다시 입기도 하고 망건을 벗어 다시 쓰기도 한다. 활보하기도 하고 급히 뛰어가기도 하며, 몸을 돌려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다가 몸을 돌려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끈두박질했다가 뛰어오르기도 하고 줄을 안고 돌기도 한다. 거미처럼 휘늘어지고 학처럼 다리 들고 호미로 김매고 풀무질하며 얼음지치고 널뛰기하는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구경꾼들이 에워싸서 머리끝이 솟구치고 혀를 내밀며 기이하다고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다. 참으로 빼어난 기예라고 할 만하다.<sup>3)</sup>

박만회가 공연한 것은 외줄타기로서 이 시기 정교해진 줄타기의 각종 기술을 묘사하였다.<sup>4)</sup> 줄타기를 이만큼 자세하게 묘사한 글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sup>5)</sup> 명문 사대부 작가가 천민에 속하는 줄타기 공연자에게

2) 사진실, 「광막한 천지에 부는 바람 같은 사내, 광대 달문」,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휴머니스트 2008), 164-183쪽; 차충환, 「상하 경향을 아우른 휴머니즘과 자유인의 형상, 달문」, 김진영 외, 『조선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보고사, 2007), 128-154쪽; 안대회, 「당대를 쥐락펴락한 만능 엔터테이너 광대 달문」,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한겨레출판, 2010), 91-103쪽.

3) 徐宗華, 『藥軒遺集』 권4 33장, 「送優人朴萬會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優人 朴萬會者, 務安舟山人, 乃吾司馬新恩時所率者也. 於優倡雜技, 無所不能, 而尤善於乘索之戲. 植數仞之木於庭之左右, 木頭橫亘一索. 於時躍而升之, 或坐或跪, 或臥或起, 或盤膝而蹲, 或獨足而立, 或歌或舞, 或嘯或笛, 或脫衣而衣, 或解巾而巾, 或闊步或急趨, 或轉身而東, 既東又轉身而西, 或筋斗而超, 或抱索而環. 至於蛛蟬鶴金鋤軋踏治走水探板之技, 不一而足. 觀者堵立, 莫不竦髮吐舌, 嘖嘖稱奇, 可謂技之精者也.”

4)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관련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호승의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14집(2007), 387-426쪽을 볼 때도 거의 사례가 없다.

5) 李瀾의 『星湖僿說』 제5권 「萬物門」의 ‘踏索緣橦’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送序를 써준 이유는 바로 그의 현란한 기예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작자가 줄타기 광대의 기예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다. 줄타기 기예는 18-19세기에 대중적 공연 예술의 총아로서 지식인들의 기록에도 등장하였고 그림으로도 꽤 많이 그려졌다. 그만큼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찬탄을 자아낼 만한 기량을 보이며 탄탄한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었다. 줄타기가 지닌 높은 수준의 기예는 천하에서 조선이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sup>6)</sup> 서종화가 박만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서술하며 그에게 양반사대부끼리 주고받는 송서를 선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연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공연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서 최고의 기량을 보인 거장의 경우에는 상류층 작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 살펴볼 卓文漢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 II. 卓文漢의 집안과 기예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누린 공연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감상자로부터 적절한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 탈춤을 비롯한 연희물이었다. 俞晩柱(1755-1788) 같은 사대부는 수준 높은 산대놀이조차도 거칠고 난잡하여 아무런 의의도 없는 공연물이라고 혹평하기까지 했다.<sup>7)</sup> 산대놀이를 구경하고서 「南城觀戲子」를 지은 姜彝天(1769-1801)도 공연을 상세하게 묘사했으면서도 뒷부분에서는 그 가치를 폄시하였다. 이렇게 보통은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낮은 평가한 배경에는 공연 담당자를 향한 멸시가 깊이 작용하였다. 탈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희는 천민들이 맡아서 공연하였기 때문이다. 산대도

6) 앞서 언급한 李瀛이 『星湖僿說』에서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서 이 기예는 대단히 정교하여 청나라 사신이 보고서 천하에 없는 재주라고 말했다”(今我東之俗, 此伎絕巧, 北使見之, 以爲天下無有云)라고 지적하였고, 박제가도 「城市全圖」에서 “동방의 쌍줄타기는 천하에 없는 거라, 줄타기와 공중제비를 하며 거미처럼 매달렸다. 한 곳에서는 꼭두각시 무대에 올라오자, 동방에 온 勅使가 손뼉을 친다”(東國撞竿天下無, 步繩倒空繩如螻, 別有傀儡登場手, 勅使東來掌一抵)라고 하여 줄타기 기예가 천하에 없는 대단한 기예임을 평가하였다. 그런 자부심은 청나라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배경으로 한다.

7) 俞晩柱, 『欽英』 권3 179쪽, 규장각 영인본. “東俗之山臺, 卽中國之戲場雜劇也. […] 乃若山臺所謂鐵網僧之類, 都無義意, 只是粗陋胡亂而已, 何足道哉?” “東舞處容黃倡, 猶有可據, 不至如山臺之沒下落也.”

감에서 공연하는 선발된 연희패들조차도 조정에서는 무퇴배로 인식하여 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흔히 사치스럽고 방탕하며, 천박하고 외설스럽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때문에 설령 뛰어난 예술성을 보유했다고 해도 짐작은 선비의 기록에 올라 그 존재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18세기 이후 각종 의례를 시작으로 『日省錄』, 『承政院日記』 따위의 사서에는 국가의 공식 행사에 동원되는 공연문화 종사자들의 성명이 종종 등장한다. 참여자의 인적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의례에는 그 기록방식에 따라 山臺都監의 공연에 참여한 인명이 자세하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활동상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공식적 행사의 하위 체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익명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료의 경우에는 대체로 큰 소요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존재가 부각되므로 그 실체를 규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조선시대 탈춤 공연자는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 실정에서 卓文漢이라는 인물은 탈춤꾼을 비롯한 공연문화의 주동자로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탁문한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기의 공연문화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주목할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를 다룬 많은 연구에서 그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연희문화를 해명하는 데 그의 존재와 활동상은 기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

탁문한은 영조시대 한양에서 각종 연희에서 최고라는 평을 들은 광대 達文 이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강이천이 「南城觀戲子」를 쓴 1780년을 전후하여 한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희패의 수령으로 인정을 받았다. 정조시대 儺禮廳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희패의 활동 정점에 탁문한이 위치한다.

그의 활동상을 검토할 때 우선 살펴볼 기록이 趙秀三의 『秋齋紀異』이다. ‘卓班頭’라는 제목으로 64화로 실린 기사 전체는 다음과 같다.

卓班頭의 이름은 文煥으로 儺禮局의 邊首이다. 젊어서부터 황진이 춤과 만석중의 노래 및 우스개몸짓을 잘하여 班中의 자제 가운데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었다. 늙어서 청나라 사신을 영접한 노고를 인정받아 嘉善大夫의 품계를 하사받았다.

황진이는 활보하며  
얼굴을 수그리고

만석중은 비틀비틀  
장삼 입고 춤을 춘다.

黃幡綽과 敬新磨를  
빼닮은 자 누구더냐?  
班頭인 卓同知<sup>8)</sup>를  
첫손가락 꼽는다네.<sup>9)</sup>

조수삼은 卓文煥이라는 나례도감 邊首를 당대의 가장 빼어난 실력을 지닌 춤꾼으로 내세웠다. 그의 장기는 황진이의 춤과 만석중의 노래 및 우스갯소리 두 가지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연희를 다룬 연구물에서는 『추재기이』의 이 기사를 거의 주목하지 않거나 방계 자료로만 이용하였다.<sup>10)</sup> 탁문환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조차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다. 『추재기이』를 야담으로 간주하여 연구한 학계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대체로 이 기사를 아예 무시했거나 다룬다고 해도 칙사를 영접하기 위한 나례를 공연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가선대부 작위까지 받은 사례를 입증하는 기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탁문환의 실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그는 18세기의 후반의 실존 인물로서 먼 후대까지 명성을 누렸다. 다음으로 그는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탈춤꾼으로서 공식기록에까지 등장하는데 거의 모든 기록에 이름이 卓文漢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卓文煥이라는 표기는 卓文漢이 구두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다. 조수삼의 그릇된 기억과 기록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탁문환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구체적 행적은 무엇일까? 『추재기이』에는 구체적 사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그의 가계와 행적, 활동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요한 문건이 있다. 장편 한문소설 『玉樹記』를 지은 沈能淑(1782-1840)이 쓴 「卓文漢紀實」이라는

8) 동지는 同知中樞府事의 약자로 종2품 벼슬이다. 실적이 없는 중추부의 직책으로 명예직일 뿐이다.

9) 조수삼 저,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한겨레출판, 2010), 233-236쪽. “班頭名曰文煥, 儼禮局邊首也. 少工於眞妓之舞·萬石僧之歌笑, 班中子弟毋能及之者. 老以延劬勞賜嘉善階.(眞娘弓步斂蛾眉, 萬石槎槎舞納緇. 旛綽新磨何似者, 班頭先數卓同知.)”

10) 사진실의 『한국연극사연구』와 손태도의 『광대의 가장문화』 등에서 탁문환의 행적을 인용하여 다룬 정도이다.

다소 상세한 實記가 바로 그것이다. 이 實記의 주인공 탁문한은 『추재기이』에 나오는 탁문환과 동일인이 분명하다. 실기에서 그가 山棚 연희패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기의 서두에는 탁문한의 태생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卓文漢은 한양의 양민 출신이다. 사람됨이 기량과 국량이 뛰어났고, 기가 세어 날래고 사나웠다. 마음껏 행동하고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었던 데다가 술을 즐겼다. 술을 한번 마시면 기어코 만취하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술에 취하면 성깔을 부리고 뻔뻔하게 행동하였다. 길에서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남을 대신하여 화를 내서 가는 곳마다 소란을 피웠다. 그 때문에 거듭하여 범망에 걸렸으나 평소의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를 미워하였으나 감히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sup>11)</sup>

인용한 글에서 시선을 끄는 대목은 그가 천한 신분이 아니라 한양의 양민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탈춤을 비롯한 각종 연희와 관련된 직종의 담당층은 주로 천민이었다. 才人, 廣大 따위로 불린 이들은 크게 보아 세습무계의 연희자, 북방 유목민 계통의 水尺과 泮人, 才儻 계통의 연희자, 官奴, 유랑예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 어느 편이든 천인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sup>12)</sup> 그중에서 중국 사신 영접 시에 산대희에 참가하여 공연한 놀이꾼은 관에 매인 교방 기녀와 악공, 각도의 才人廳에 속해 있는 才人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며 산대도 감 또는 나레도감에 소속된 泮人 이렇게 세 부류였다고 한다.<sup>13)</sup> 어느 쪽이든 천민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에 탁문한은 한양 출신에 양민이었다. 양민 출신인 그가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천민들이나 하는 연희판에 뛰어들었다.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豪俠漢의 기질을 지닌,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그의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위에 소개한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제멋대로인

11) 沈能淑, 『後吾知可』, 「卓文漢紀實」, 필사본, 개인소장. “卓文漢, 漢陽良族也. 爲人多器局, 尙氣驍悍, 恣行而無所業. 且嗜麴蘖, 飲必劇醉爲度, 醉則肆氣放直. 塗見不愜, 爲人任怒, 隨處犯擾, 重罹法繩, 不去其行. 儕人惡之, 亦不敢絕之.”

12) 전경옥,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열화당, 1998), 141-164쪽; 『한국의 전통연희』(학고재, 2004), 319-338쪽.

13) 전경옥, 위의 책, 182-183쪽. 그런데 전경옥이 본산대 탈놀이를 한 사람으로서의 ‘泮人(성균관 노비)’을 제시한 것은 손태도의 「본산대 탈놀이패에 대한 시각」, 『고전희곡연구』 제4집(2002), 135-177쪽에서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손태도는 ‘泮人’은 ‘泮人’ 또는 ‘泮人’에서 와전되었고, 다른 집단에서 산대 놀이패를 ‘편놈’이라고 낮추어 부른 명칭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泮人’이 산대희나 나레희의 공연자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고증하였다. 여기서는 손태도의 설을 따른다.

성격 때문에 범법자로서 범망에 자주 걸리기까지 한 그였기 때문에 집안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연회패 활동을 한다 해도 집안에서 막지를 못했다. 그런 사정을 유추할 만한 정황이 위 실기에 등장한다.

탁문한의 집안과 선대 계통을 이보다 더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그가 적어도 양민 이상이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그의 가족이 한양의 軍營에서 일하는 군인가족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친형과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의 조카까지 모두 軍營에 소속된 군인이었다. 그의 부친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판단을 유보한다. 그의 친형인 卓文周는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778년에 禁衛營 牢子로 재직하였고, 1788년에는 禁衛營의 三牌 巡邏牌將이자 別騎衛로 재직하고 있었다. 게다가 탁문주의 아들이자 탁문한의 조카인 卓敏秀는 龍虎營 소속의 능력 있는 騎兵이었다. 그는 『顯隆園幸行節目』에 禁軍 소속 병사로 나오고, 『승정원일기』에는 1796년부터 1818년까지 駕後禁軍 병사로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순조 연간에는 僉使를 지내기까지 하여 1822년 慶尙右道 暗行御史인 尹命圭의 書啓에서 “龜山僉使 卓敏秀는 상당히 精詳하여 작은 鎭을 잘 다스렸다(頗能精詳, 足了小鎭)”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탁민수가 능력 있는 騎兵이었다는 사실은 「卓文漢 紀實」에도 자세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탁문한의 본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는 공연계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부터 禁衛營 소속의 군인이었다. 『禁衛營抄謄錄』 4책에는 1774년 10월 초하루에 있었던 장교와 軍兵의 무예평가와 시상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형인 탁문주는 활쏘기에서, 탁문한은 검술에서 上下의 평가를 받은 7명 가운데 수석으로 포목 한 필을 부상으로 받았다. 영조 말엽의 이 기록은 나이 30세를 넘기지 않은 젊은 시절의 탁문한의 행적을 보여준다. 결국 탁문주는 射手, 탁문한은 劍術, 탁민수는 騎兵으로서 그의 집안은 한양 군영에 복무하는 직업군인이었다.

이 시기에는 군인직업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로 추론하면 탁문한과 그의 자식대만이 아니라 그의 선대부터 직업군인의 길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은 탁문한이 어렸을 때부터 劍舞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탁문한기실」에는 검무에 달통한 그의 실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탁문한은) 어릴 적부터 검무에 능통하여 회오리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검술을 할 줄 알았다. 세상에서는 金光澤이 죽은 지 백 년 만에 탁문한이 그 신비한 기술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드디어 검술에 자신감을 가져서 山棚의 演戲場에 갔을 때 검무를 추는 자가 기예가 졸렬하여 형세를 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탁문한이 그 자리에서 검술을 혹평했는데 좌우에서 그에게 눈짓을 하였다. 탁문한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榿을 빼앗아 소매를 치고서 기세가 등등하게 춤을 추었다. 그 사실을 모든 이가 세상에 전하자 집안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겼다.<sup>14)</sup>

탁문한이 추었다는 검무는 18세기에 유행한 기녀들의 검무와는 다른 성격의 춤이다. 그가 어릴 때부터 검무에 능통한 동기가 의문이나 무인 집안에 내려오는 기예를 닦은 것으로 보면 제일 무난할 듯하다. 山棚의 演戲場에서 공연하기에 앞서 이미 검술에 상당한 조예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의 검무숨씨가 김광택의 숨씨를 이었다는 평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광택은 결코 간단한 검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광택은 숙종 시절 훈련도감 교련관이었던 유명한 검술가 金體乾의 아들로서 신비한 검법을 구사하고 검무를 춘 검술가로 한 시대를 호령했다. 그의 삶과 행적은 柳本學의 「金光澤傳」에 소개되어 있다.<sup>15)</sup> 김광택은 아버지를 이어 洪鳳漢가에서 식객으로 지내고 영조의 호위무사로서 인정을 받은 뒤 衛將과 첨사를 지낸 당대 최고의 무사였다. 父子는 조선후기 검술의 주요한 맥을 잇는 검술가이다. 그렇게 막중한 인물에 탁문한의 실력이 비견되었다는 것은 소홀하게 볼 수 없다. 설령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고 해도 그의 검술실력이 대단했고, 상당히 인정받았다는 점을 의심하기가 어렵다.

가족들이 군영 소속의 군병이었고, 자신도 군영 소속인 데다가 검술과 검무에 발군의 실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탁문한이 조선후기 연희를 주도하는 군영과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후기에 한양의 연희패는 의금부와 포도청을 비롯해 龍虎營, 훈련도감 등의 군영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양의 유흥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세력으로도 활동하였다.<sup>16)</sup> 탁문한 본인은 연희패에

14) 沈能淑, 앞의 글. “自幼通劍舞, 能作迴風落花之狀. 世言金光澤死後百年, 文漢得其神云. 遂以劍自奇, 往山棚之戲, 見舞劍者偏拙, 不能乘勢, 立評其劍, 左右目之. 文漢挺然而起, 直奪榿打袂而舞騰騰. 人皆傳之, 家人恥之.”

15) 안대희 저 『고전산문산책』 유본학 편에 이 글이 번역·소개되어 있다.

직접 가담하지 않고 그 패턴의 역할을 할 계층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직접 연희패에 가담하였다. 한양 연희패의 출신과 관련하여 그의 처신은 중요한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거리이다.

탁문한이 양인 출신의 무인집안 사람으로서 賤人들의 役으로 여겨졌던 연희패 놀이에 직접 가담한 것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였다. 자유분방한 성격과 주체하지 못하는 끼가 사회적 제약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과감하게 연희패로 이끌었다고 하겠다. 『탁문한기실』에서는 그가 山棚의 演戲場에서 검무를 추었다고만 기록했으나, 앞서 『추재기이』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젊어서부터’ 탈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춤꾼이었다. 『탁문한기실』이 탁문한과 집안사람의 의리와 덕망을 찬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글이라는 제약 때문에 언급하면 할수록 격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이 틀림없는 연희패 활동을 일부러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그가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연희패에서 기세가 등등하게 춤을 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집안사람들은 몹시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연희패에서 활동한 행적은 집안의 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친형인 탁문주가 탁문한을 뜻을 굽혀 아꼈다(曲意遵愛)고 말한 것도 동생이 천민의 역인 탈춤꾼으로 활동함으로써 집안의 격을 떨어뜨린 행동에 대해 못마땅했으나 애써 우애를 유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의 경력이 뒤에 다시 문제가 된 것을 봐도 그렇다. 후에 大將이 문벌을 기준으로 기병을 도태시키려고 하였다. 龍虎營 소속 기병인 조가 탁문수는 문벌을 조사하다 보면 숙부인 탁문한이 山棚의 演戲場에서 활동한 천민의 행적이 폭로되어 숙부에게 욕이 돌아갈 낚새를 눈치채고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였다. 그는 “소인의 문벌은 대대로 증거가 있습니다. 다만 숙부께서 젊은 시절에 행한 실수가 저 때문에 드러날 듯하므로 자진하여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행히 그의 처신을 높이 평가한 대장 덕분에 일은 무마되었다.<sup>17)</sup> 유명한 무인인 李得淵이 우연히 탁문한의 족보를 얻어 보고서 그가 천민이 아니라 양민임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16) 사진실, 『한국연극사연구』(태학사, 1997), 232-249쪽.

17) 沈能淑, 앞의 글. “他日其姪敏秀, 以騎屬龍虎營, 帥第之門閭, 以次汰之. 自思其叔曾入於山棚之戲, 乘間自陳曰: ‘小人之閭, 代有徵矣. 第恐家叔少日之累, 因己而現, 敢以自退.’ 帥賢而不許.”

탁문한이 “일찍이 山棚의 演戲場에 들어갔다”(其叔曾入於山棚之戲)라는 기술은 검무를 한두 차례 추었다는 수준을 말하지 않는다. 양인 신분의 탁문한은 젊은 시절 상당한 시간 동안 연희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대단한 명성을 구가하였다.

### III. 탈춤꾼과 匠人으로서의 활동상

기록을 근거로 탁문한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인으로서 검술과 검무에 대단한 실력을 갖추었다. 둘째, 양인 신분으로 軍營에 소속된 직업 軍兵이었다. 셋째, 성격이 괘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넷째, 술을 많이 마셔서 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다섯째, 젊은 시절 상당한 시간 동안 연희패에서 활동하였다. 여섯째, 탈춤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뽐냈다.

주요하게 살펴볼 일은 연희패로서 그가 어떤 활동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대한 만큼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추재기이』에서 “젊어서부터 황진이 춤과 만석중의 노래 및 우스개몸짓을 잘했다”(少工於眞妓之舞·萬石僧之歌笑)라고 지적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산대도감에 소속되어 탈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공연했다고 볼 수 있다. 탁문한과 동시대 학자인 柳得恭은 『京都雜誌』에서 “연극에는 山戲와 野戲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에 소속되었다. 산희는 山棚을 매고 휘장을 치고 사자, 호랑이, 만석중 따위의 춤을 춘다. 야희는 唐女와 小梅로 분장하고 논다”<sup>18)</sup>라고 기록하였다. 탁문한이 빼어난 실력을 보인 황진이의 춤과 만석중의 노래 및 우스개몸짓은 바로 유득공이 언급한 만석중 춤을 추고 노래와 재담을 공연한 것을 가리킨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였기에 “班中の 자체 가운데 그를 따라잡을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여기서 班中은 산대도감에서 연희를 하는 연희패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탁문한이 공연했고, 『京都雜誌』에서 언급한 만석중 공연은 만석중놀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만석중과 황진이가 등장하는 춤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탈을 쓰고 공연한 것인지

18) 柳得恭, 『京都雜誌』 권1, 조선고서간행회, “演劇有山戲野戲兩部, 屬於儂禮都監. 山戲結棚下帳, 作獅虎曼頭僧舞, 野戲扮唐女小梅舞.”

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산대 탈놀이에서 노장 과장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만 황진이탈과 만석중탈을 쓰고 공연하는 탈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수삼이 시에서 “황진이는 활보하며 얼굴을 수그리고/만석중은 비틀비틀 장삼 입고 춤을 춘다”라고 탁문한 춤을 묘사한 데서 그는 역할을 바꿔가며 탈을 쓰고 공연했다고 할 수 있다.

탁문한은 이렇게 양인 신분에서 검술가라는 평범하지 않은 경력을 지닌 연희패로서 산대도감에 소속되어 탈춤과 검무 따위로 명성을 얻었다. 춤꾼으로서 명성을 얻어 산대도감에서 활약한 시기는 그가 젊었을 때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는 연희에 직접 가담하는 것보다 연희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제작자로 활동의 폭을 확대하였다. 연희를 작파하고 장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둘을 겹쳐서 한 것으로 보인다. 「탁문한기실」에서는 집안에서 그의 연희패 활동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 이후 탁문한이 갑자기 술도 그만 마시고 행실도 바꿨다고 서술하였다.<sup>19)</sup> 아버지에 대한 효도 때문이라고 동기를 댔으나 그것은 윤리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벌써 나례청에 소속되어 공연 도구를 만드는 匠人으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탁문한이 정조와 순조 연간의 각종 儀軌에 공연 도구를 제작하는 匠人邊首로서, 다시 말해 탈을 비롯한 도구를 제작하는 책임자로 거듭 이름을 올린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다.

표1-조선왕조 의궤에 보이는 장인 탁문한의 활동내역

	연대	의궤 이름	역할	동참자	비고
1	1776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方相氏匠	金有福 沈四得 韓敬喜	나례청
2	1800	[正祖]國葬都監儀軌	竹散馬匠	朴善郁 兪聖得 金廷大 申甲得 林範得 林昌大 朴興福 金昌仁 趙貴孫 鄭雲起 全永 鄭興 全景喆	
3	1805	[貞純王后]國葬都監虞主所儀軌	竹散馬匠	兪聖得	
4	1815	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	竹散馬匠	朴善郁 洪光周 林範得 金龍興 全昌國	
5	1821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竹散馬匠	金龍興 李龍賢	
6	1821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方相氏匠	金喜大 梁完貴 金宜得 金玆夢	나례청

19) 沈能淑, 앞의 글. “家人恥之, 其後忽斷飲改行.”

그의 이름이 올라간 의례를 정리하여 들여보면 표1과 같다.

1776년부터 1821년까지 그는 國葬이 있을 때마다 연희패들이 담당하는 직역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하였다. 다시 말해, 국장에서는 儺禮應이 方相氏의 제작을 맡고 또 다른 기관에서 竹散馬의 제작을 담당하였는데, 그 임무에서 탁문한은 匠人都邊首로 활동하였다. 여기서 방상시는 국장 때 악귀를 쫓는 탈로 사용되었고, 죽산마는 국장 때 대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말이다. 모두가 연희 때 사용하는 도구와 관련이 있는 의장용 도구이다. 1776년 영조국장과 1821년 정조천릉국장 때에는 나례청에 소속되어 방상시를 만들었고, 기타 네 번에 걸쳐 죽산마를 제작하였다. 무려 40여 년 동안 탁문한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례에서 나례청에서 책임지고 제작할 의장도구 제작의 최고책임자로 활동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1776년에도 그가 변수였다는 점이다. 이때는 20·30대를 벗어나지 않을 시기로 추정되는데 이때에도 변수로 등재되어 젊은 시절부터 그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만하다.

1776년에 그가 만든 2座의 방상시<sup>20)</sup>와 1800년 그가 만든 10座의 죽산마는 현재 전해지는 의례를 통해 기본적인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sup>21)</sup> 그림은 각각 「工匠秩」의 「凶儀仗秩」과 「班次圖」에 실려 있다. 의례에 실린 그림만 가지고도 그가 제작한 것이 탈춤에서 사용하는 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의 40여 년 동안 국가에서 사용한 탈과 관련한 가장 우수한 제작자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일반적으로 연희를 연행하는 사람이 모두 직접 연희에 사용하는 도구까지 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탁문한은 젊은 시절부터 연희 도구 제작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더욱이 장인으로서 중요한 점은 그가 나례도감의 도변수로서 칙사영접 때 山臺와 雜像의 제작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사건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匠人으로서 그의 활동은 「탁문한기실」에서도 언급하였다. 부친과

20) 의례의 「凶儀仗秩」 ‘方相氏四’에 그 모양과 기능, 위치 따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在後殿大旗之後分左右，所以辟除陰邪者。朱漆假面，黃金四目，玄衣朱裳，蒙熊皮，執戈揚。看來兩輪車，梓宮上山陵時，先至退壙上，以戈髻四隅車子四，自一房待令。”

21) “竹散馬二匹，先設井字板，鑿孔於四隅，磨造四蹄，安於孔上。次造四脚，樹於蹄孔，蹄脚相接處，着鐵釘。次造形體，以空石裘之。次以藁草編結，裘以席子生布，以紙再塗編束尾鬚黑漆作加羅色長八尺七寸高五尺立之兩輪車上用禮器尺。”

형이 죽고 난 뒤 탁문한은 “이윽고 梓人(필자주: 匠人)을 좇아서 長이 되었다. 앉아서 宮室을 논하고, 서서는 繩墨을 살폈는데 속으로 설계하여 입으로 불러주면 마치 부절을 합친 듯하였다.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고, 상을 받아 資品을 뛰어넘었다”<sup>22)</sup>라고 기록한 대목이 그것이다. 이 기사는 그가 건축술을 배워 집을 짓는 장인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꾀했고, 후에는 도편수가 된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에게 書室의 건축을 맡긴 사람이 그의 능력을 칭찬하는 내용을 첨부하기도 하였다.<sup>23)</sup> 그의 행적으로 볼 때 앞서 의궤에서 그가 방상시 탈과 죽산마를 제작한 장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잘못 전해져 건축일을 했다고 와전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기능에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건축까지도 능력을 발휘했다고도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대 이전에는 기술자나 기예를 연마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장기만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sup>24)</sup>

탁문한은 탈춤에서 빼어난 기량을 보였으나 실은 다른 기예에도 능했다. 『탁문한기실』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큰 국사가 있을 때마다 재능을 발휘하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야만 상으로 資品을 뛰어서 높은 품계로 올라갔다는 뒷부분의 서술과 어울린다. 이것은 『추재기이』에서 “늙어서 사신을 영접한 노고를 인정받아 嘉善大夫의 품계를 하사받았다”라고 기록한 것과 부합한다. 그가 품계를 하사받은 사실은 기록을 놓고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 사유가 사신 영접 때 세운 공로 때문인지 아니면 국장에서 세운 공로 때문인지 차이가 난다. 실상은 둘 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식기록에는 그가 탈춤꾼으로서 활동한 내용보다 장인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 과연 탁문한이 탈춤꾼으로서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한다.

22) 沈能淑, 앞의 글. “乃從梓人爲長, 坐論宮室, 立視繩墨, 心計而口授, 若合契焉. 有事稱能, 以賞超資.”

23) 沈能淑, 앞의 글. “公洞人曰: ‘往年余營小山書室, 有言卓文漢之能, 見其狀矯健, 語又敏快, 亦知其可用, 而未之詳也.’ [...] 吁! 文漢末乃從匠氏爲長者, 亦寓小試其器者歟.”

24) 안대회의 『조선의 프로페셔널』(휴머니스트, 2007)에서 분석한 과학자 정철조와 기술자 최천약의 경우가 그 같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추재기이』에서는 그를 班首 또는 班頭라고 표현했다. 2개의 표현 모두 邊首와 같은 말로서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용어이다. 각종 단체나 무리의 우두머리에 붙여서 쓰는 말이다. 기록에는 탁문한이 변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都邊首를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칙사를 영접하는 공연에서 班首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선대부의 작위를



그림1-1776년 『영조국장도감의궤』의 班次圖에 보이는 방상시 2座 중 하나. 이 실물을 탁문한이 책임지고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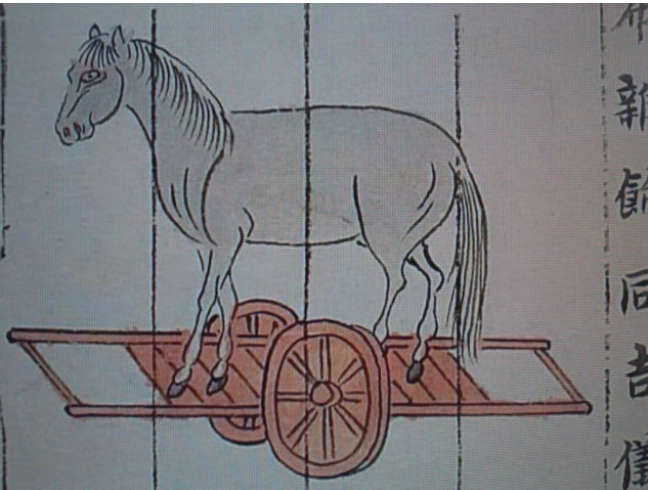


그림2-1800년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실린 죽산마 모형으로서 이 의장의 실물을 탁문한이 책임지고 제작하였다.

받았다고 했다. 이 작위는 종2품 관작으로 높은 작위이다. 또 심능숙은 李得淵이 보여준 탁씨 집안 족보를 보니 그의 집안이 대대로 녹봉을 받는 관직을 받았다고 했고, 탁문한은 유달리 임금으로부터 恩賜를 받아 資憲大夫에 올랐다고 하였다.<sup>25)</sup>

자헌대부는 정2품이므로 가선대부보다 한 등급이 높다. 조수삼은 시에서 만석중놀이를 공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당나라를 전후한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배우인 황번작<sup>26)</sup>과 경신마<sup>27)</sup>에 버금가는 배우로서 탁문한을 인정했다. 이들 배우의 특징은 민간에서 활약한 인물이 아니라 황제의 사랑을 받은 궁정배우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탁문한이 나례도감 변수로 큰 활동을 한 경력과 부합하는 비교이다.

#### IV. 1784년 갑진년 나례청 사건과 탁문한의 역할

탁문한이 나례도감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은 1784년 정조 8년 갑진년 11월의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된다. 이해 文孝世子の 책봉이 거행되어 11월 청나라로부터 封典勅使가 왔다. 정조는 1738년(戊午年) 사도세자 책봉을 위한 封典勅의 전례를 따라서 나례를 設行하도록 명하였다. 거의 50년 만에 정식으로 나례가 실행된 것이다.

11월에는 칙사가 한양에 당도하기 때문에 영접을 위한 준비가 이전부터 바쁘게 진행되었다. 正祖는 “이번 칙사 행차는 事體가 절로 특별하다. 나례만을 놓고 말하더라도 그만둔 사례가 많으나 일부러 設行을 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친다면 그만두어도 무방할 것이다”<sup>28)</sup>라고 할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칙사를 환영하기 위해 전후 보기 드문 환영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세 건이나 발생하여 정조의 애초 구상과는 달라졌다.

25) 沈能淑, 앞의 글. “又見李君所收籍, 則世有祿秩, 而文漢階資憲, 恩賜也.”

26) 황번작은 당나라 현종 때의 저명한 공연 예술가이다. 그는 「參軍戲」 공연의 명인으로서 30년 동안이나 궁궐에서 공연한 저명인이다. 참군회는 參軍과 蒼鶴의 두 배우가 등장하여 명칭이 배역과 기지를 부리는 배역으로 나누어 풍자와 우스개 연극을 하였다.

27) 경신마는 五代 後唐 때 배우이다. 壯宗의 총애를 받은 배우로서 군주를 풍자하고 익살을 부린 많은 일화가 남아 있다. 구양수(歐陽脩)가 편찬한 『新五代史』 「伶官傳」에 그의 활약과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28)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0월 6일자 기사. “今番勅行, 事體自別, 雖以儺禮言之, 多有已例, 故欲命設行, 而若有弊於市民, 則置之無妨矣.”



이 사건의 여파로 칙사가 올 때 나례를 설행하던 관례가 이후부터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784년의 나례도감 사건은 조선 후기 연극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탁문헌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였다.

1784년 11월 칙사가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조정에서는 영접도감을 설치하였다. 나례를 설행하는 준비로 국왕은 담당 堂上官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적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사항이었다. 첫째는 나례 공연의 면밀한 관리였다. 『승정원일기』의 10월 6일, 8일, 9일 기사는 신료를 접견하고서 나례를 중심으로 나눈 대화가 실려 있다. 모화관에서 設行하면 장소가 넓어 구경하는 인원이 부상당할 염려가 있고, 나례도감 인력은 무뢰배가 많으므로 좌우 포도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라고 당부하였다.<sup>29)</sup>

두 번째로는 나례의 도구 제작과 관련한 주문이었다. 도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사람을 부상시키는 폐단이 없도록 지시하였는데, 광화문 높이 만큼 큰 산대로 인해 자주 사고가 발생한 전례를 파악하여 이를 염려한 것이다. 우려에 대해 정일상은 軒架와 山棚은 목재가 아니라서 제대로 갖추어 만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조는 儼車는 규격이 커야 優人들이 그 위에서 연희할 수 있다며 수긍했다.<sup>30)</sup>

세 번째로는 나례 도구와 공연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문제였다. 정조는 특별히 傳敎를 내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칙사를 영접하기 위한 나례를 設行할 때 연희도구와 임시무대, 가설재목 따위를 京江商人 부호들과 시전상인들에게 대납시켜 큰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관습처럼 내려오는 것을 지적하고, 그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모든 비용을 관에서 마련할 것이며, 담당 고위관료가 이를 직접 챙기라는 명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다.

청나라 칙사 일행을 맞아 나례를 設行할 때, 해당 도감에 소속된 자들이 도구를 만드는 밀친 값이라며 부잣집에 돈을 요구한다. 또 가설무대에 쓸 재목 건으로 강가

29) 『승정원일기』, 앞의 글. “(徐)有隣曰: ‘雖有些少弊端, 亦爲貴飾之一端, 壬寅戊午兩年, 前例皆爲之矣.’ 上曰: ‘觀光之人, 或有傷之者云, 然否?’ (鄭)一祥曰: ‘寬曠處爲之, 則似無傷人之慮矣.’ 上曰: ‘儼禮都監, 皆是無賴之流, 京中若有竊發之事, 亦屬可悶矣.’ 一祥曰: ‘左右捕將, 例皆句管, 若嚴加禁戢, 庶無此患矣.’”

30)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0월 8일자 기사. “上曰: ‘儼禮勿令張大, 俾無傷人之弊, 可也.’ (鄭)一祥曰: ‘軒架山棚, 全無木物, 此則不可不備矣.’ 上曰: ‘儼車體大, 然後倡優可以戲其上矣.’ 對曰: ‘然矣.’”

백성들을 괴롭혀 각종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에는 포도대장 종사관이 담당하는 관례를 벗어나 따로 낭청에게 지시하고, 延接都監의 당상관에 한성관윤과 평시서 제조를 겸직하게 한 것도 지금까지의 폐단을 통렬히 금지하려 한 의도였다. 이런 뜻으로 얼마 전 筵席에서 지시했다. 이 지시 이후에도 만일 그릇된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며 날날이 금지하지 못한다면 책임자 이하 모두에게 무거운 죄가 있을 것이다. 또 나례 비용을 모두 市民에게 부담시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지어 부유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일은 더더욱 금지할 것이다. 이번에는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서 해당 부서에서 物力를 헤아려 지급함으로써 털끝만 큼도 민폐를 끼치는 단서가 없게 하라. 이 일을 의정부로 하여금 연접도감에 엄중히 지시하라.<sup>31)</sup>

이렇게 국왕이 나서서 나례의 실행에 큰 관심과 염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나례에서 연희와 관련한 부분은 邊首 두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었다. 都邊首는 탁문한이었고, 변수는 沈四得이었다. 심사득은 1776년 탁문한과 함께 방상시를 만든 장인이었다. 탁문한은 山臺의 조성을 책임진 匠人邊首였고, 심사득은 공연, 즉 遊戲를 책임진 遊戲邊首였다. 전체 책임자, 즉 都邊首가 탁문한이었다. 이때 발생한 사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한밤중 放砲 소동이다. 訓練都監에서 사건경위를 조사한 내용이 『訓局臚錄』과 『승정원일기』에 상세하게 나온다. 11월 4일 나례청에서 한밤중에 연습을 한다고 禁衛營 待年軍으로서 나례청에서 일하던 林光錄이 조총을 세 방 쏘았는데, 총성 소리가 너무 커서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동요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다음날 정조는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임광록은 세 번이나 나례청에서 일한 변수 심사득으로부터 연희를 私習할 때 총을 쏘고 吹打하는 관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총을 쏘면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崔泰謙을 비롯한 여럿이서 상의하여 조총과 화약을 가져다가 쏘았는데 화약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총성이 매우 커서 소요를 일으켰다.

나례청 연희를 총책임진 都邊首 탁문한은 취조에 응하여 이렇게 供招

31)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0월 9일 기사. “上命書傳教曰; ‘每當勅行, 有儼禮設行之時, 該都監所屬, 稱以像帖價本, 侵漁富戶. 又於假家材木, 作挈江民, 種種弊端, 不一而足云. 今番則以捕廳大將從事官例管之外, 別爲啓下, 堂郎延接都監諸堂, 亦以京兆長·平市提調兼帶者, 蓋欲痛禁前日之弊. 俄於筵席, 亦有飭教. 如是申飭之後, 萬一有任其習謬, 不能一一禁戢, 自館伴以下, 當有重勘. 且聞儼禮之需, 皆令市民責應, 此亦無意. 至於勒奪富民財貨, 尤所當禁. 今番則計其所入, 自該曹上下物力, 俾無一毫貽弊之端事. 亦令廟堂, 嚴飭延接都監.’”

하였다. ‘본인이 匠人邊首로서 산대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만든 산대가 바로 무너져서 전날 겨우 산대의 난간을 조성하였다. 구경하려는 양반과 여러 사람들이 난간에 올라가 私翫하는 장면을 구경한다고 난간을 다시 무너뜨릴까 염려하여 시습하는 갖가지 유희를 모두 함께 문밖으로 내쫓았다. 산대를 검사하는 중에 총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을 질책하고 다시 들어왔다. 난간을 관찰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연을 물었을 뿐 다른 잘못이 없다.’<sup>32)</sup>

훈련도감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서 “대체로 나레청은 예로부터 左邊 右邊으로 나뉘어 서로 이기려는 고질병이 있어서 유희할 때 갖가지 변괴의 일을 술하게 만들어내고서는 기이한 구경거리로 삼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겨뤘다. 세상이 다 알고 있다”<sup>33)</sup>라고 보고했다. 이 사건은 산대를 조성하고 유희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사건이 이렇게 커져버렸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탁문한이 산대 제작자로 활동한 내역과 산대조성의 과정이 일정 정도 밝혀졌다. 그는 인명과 행적이 밝혀진 거의 유일한 산대 제작자로서 주목된다.<sup>34)</sup> 사건의 결과 禁衛大將 徐有대가 파직당하고 탁문한과 심사득은 일단 곤장을 맞고 변수에서 물러나게 한 뒤 나중에 죄를 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레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sup>35)</sup>

두 번째로 열흘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였다. 탁문한은 특별히 방면되어 여전히 산대조성과 유희 연습에 간여하였다.<sup>36)</sup> 변수 자리는 교체되어

32) 『訓局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필사본, 37책, 甲辰十一月初五日조. “都邊首卓文漢所供內. ‘矣身以匠人邊首, 次知造山, 而初次造山, 旋即頽. 故昨日董董造成欄干, 而觀光兩班與諸人登欄干, 觀其私翫. 故爲慮欄干之更頽, 私習諸般遊戲, 皆逐出門外, 看檢山帶之際, 聞砲聲驚動, 出去問責諸人, 還爲入去看察欄干, 質問諸人, 則矣身之初不干涉, 可以洞燭, 更無所達.’云.”

33) 『訓局謄錄』, 앞의 글, “大抵儂禮廳, 自古分左右邊, 各自勝癖. 遊戲之際, 百怪之事, 互相層出, 作爲奇觀, 自以爲孰勝孰負, 世所共知.”

34) 현재 산대의 구조와 제작과정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이 사진실의 「산대의 변천과 무대미학」(『공연문화의 전통』, 176-215쪽)이다.

35) 이 사건은 『盧尙樞日記』에도 기록되었다. 「正宗八年甲辰日記」 11월 5일자 일기에 “是夜, 迎勅山臺都監軍, 私自放砲習儀, 砲聲達于大內, 使之往察, 則此所也軍亦借砲於禁營, 故禁衛大將徐有大罷職”이라고 기록하였다.

36) 노상추는 이 달 5일자 일기에서 칙사를 맞이할 때 산대를 공연하는 것은 雜戲로서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설행한다고 기록했다. 이 무렵 거듭 習儀한 것을 목도했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初八日己未, 陽寒. 迎勅時山臺者, 乃雜戲, 而中間廢之已久矣, 今亦更設云.”

다른 이가 책임을 맡았으나 여전히 탁문한의 입김하에 있었다. 11월 13일과 14일은 永陵忌日이라 齋戒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체의 풍악과 유희가 금지되었다.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칙사 영접을 위한 산대의 조성과 연습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속하다가 적발되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가 의금부에 배속되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변수와 함께 연습을 방치하고 게다가 구경까지 한 포도대장 둘과 다른 고위 장교들까지 파직과 구금을 당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조사결과 새로 임명된 변수 李好萬과 金壽泰는 탁문한으로부터 “얼마 전에도 工役이 지체되어 엄중하게 독촉을 받았거늘 언제 일을 다 마치려 는가?”라고 분부하는 말을 듣고 죄를 입을까 두려워 16·17일 사이에 일을 마치려고 서둘렀다. 가장 시급한 일이 산대가 대단히 커서 남대문으로 산대들의 아랫부분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 高廣出樣하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탁문한을 주축으로 하여 작업을 했을 때 秀才와 음악까지 함께 연습했다. 한술 더 떠 연습행사 자체가 대단한 구경거리여서 포도대장을 비롯한 다른 고위 무관들까지 나와 구경꾼 대열에 합류했다. 『일성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에 이와 관련한 정조의 개탄과 처벌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이 사건은 사대부의 법준수와 의식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을 만큼 정조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sup>37)</sup>

이 사건으로 인해 탁문한은 平安道 碧潼郡으로 유배가 결정되었다. 정조는 전날 총포를 쏜 사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방만한 그가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개하여 그를 엄형에 처하였다.<sup>38)</sup> 『정조실록』 14일 날짜에는 수많은 관료를 문책하는 국왕의 전교가 실려 있다.<sup>39)</sup> 나례도감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

37) 무관인 노상추는 13일자 일기에서 이날 성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중신과 명사들이 구경하러 와서 정조는 야간통행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포도대장을 해임하였다고 기록하였다. “十三日甲子, 暘而大寒. 是夜, 山臺都監習儀, 重臣·名士以玩景次, 傾城來會矣. 自上聞其事, 以爲夜禁解弛, 罷職左右捕將.”

38) 『御營廳謄錄』 권76, 甲辰 11월 14일 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필사본. “國忌日動樂, 法文不但以邊遠之定配磨鍊. 渠輩向日砲響之事, 不知懲畏, 昨日則來告私習, 今日則如例習樂. 國有法綱, 安敢乃爾? 其中卓文漢稱名漢, 卽向日特放之漢也. 再犯重罪, 尤極痛駭. 厥漢嚴刑, 今日內發配, 而適值齋日, 不可用刑, 分付咸鏡監司處, 除尋常各別嚴刑.”

39) 『정조실록』 8년 11월 14일 기사. “摺紳間名教日就掃地, 豈特昨今日設棚張樂事爲然? 然堂郎之躬參身犯, 猶是意慮之所未到, 良亦痛駭. [···] 所謂堂上, 雖曰武弁, 俱是已躋宰列者, 至於郎廳, 訓正·訓副, 堂下極望, 而率皆無難犯科. 張樂之不足, 至於設棚, 設棚之不足, 甚至以私習之意, 來告政院, 要卽轉稟. 政院亦不能退斥, 士大夫風習至此, 寧不寒心?”

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國忌日에 연습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칙사가 오기 직전에 성문을 나서서 연습하는 것은 관례적인 행사였다. 순조 때 제작된 『儀禮總覽』에 따르면, “칙사가 한양에 들어올 臨時하여 軒架를 교외로 끌고 나가 의례를 私習한다”<sup>40)</sup>라고 기록하고 이 관례가 1784년의 칙사 때에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儀禮總覽』에서는 그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 따른 정조의 처분 때문으로 보인다.<sup>41)</sup> 사건이 발생하자 정조는 “이번 칙사 영접 나례는 무오년(1738) 전례를 따랐으나 처음부터 부득이한 것이었다”라며 나례를 설행한 것을 후회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정조는 나례의 설행을 구실로 하여 京江商人과 시전상인 및 지방 관아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범하는 자를 색출하라는 엄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두 건의 사건이 벌어지자 정조는 이미 내린 명령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염탐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조사한 결과로는 국왕의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해 11월 16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는 자세한 불법행위를 적고<sup>42)</sup> 그 책임자가 이미 죄를 받고 유배를 간 탁문한 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형장을 가하라고 주청하였다.<sup>43)</sup> 이 사건으로 인해 탁문한은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상 1784년 11월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모두 칙사의 영접을 위해 산대를 만들고 연회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어느 하나

40) 邊鎬, 『儀禮總覽』, 규장각 소장 활자본, 1819년. “勅使入京臨時, 軒架曳出郊外, 私習儀.” 이 자료는 그동안 학계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조선후기의 나례 설행과 관련해서 주목할 문서이다.

41) 『儀禮總覽』같은 조에 “乾隆甲辰不爲習儀”라는 주석과 補卷 권1에 “在前多因勅使言曳止城外, 而甲辰不爲習儀, 前期結棚於迎恩門左右, 迎勅後, 卽爲撤去. ○送勅時元無設棚之例”라는 주석을 달아 이 사실을 밝혔다.

42)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0월 16일 기사. “今番儀禮設行時, 京外恤民弊之前後勸教, 既勤且摯, 軫都民則革賞帖之謬例, 軫江民則禁帆竹之取用, 工匠雜費, 並令官辦. 而臣等不善對揚, 本廳所用木物·雜物, 徒襲舊例, 多定外邑, 不察之失, 已無所逃. 而今因傳教, 各人等處, 一邊嚴加查問, 一邊別岐廉探, 則防納受賂之數, 若是狼藉, 渠等雖以計程遠近, 量木大小, 論定捧價爲言, 而如是之際, 操縱抑勒之弊, 不言可知, 況其數爰, 決不止此者乎?”

43) 『승정원일기』, 앞의 글. “邊首輩則前邊首卓文漢·金珍彬, 雖以他罪發配, 而新邊首姜世珍·李好萬等, 渠既同在一廳, 則萬無不知之理. [...] 至於前邊首兩漢所爲, 節節痛駭. 令各該配所道道臣, 卓文漢·金珍彬等稱名漢, 更加決杖發配. 如已發配, 待拷限捉來舉行事分付. 其餘各人等, 並放送, 可也.”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 모두가 도변수 탁문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는 젓값을 치르느라 벽지로 유배를 갔다. 1790년 6월 24일 진도에 있는 죄수 탁문한을 방면한다는 『일성록』 기사에 따라 이해에 방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려 6년간이나 유배를 산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했으나 미봉하고 영접을 위한 나례 행사는 일단 거행되어 온 성안이 나례 구경으로 떠들썩하였다.<sup>44)</sup> 문제는 그 이후이다. 사건 이후로 조정에서는 다시는 나례를 설행하지 않았다. 본래 나례는 吉禮일 경우에만 설행하였다. 그러나 1784년 이후에는 길례라 해도 우리와 저쪽의 사정 때문에 나례를 거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의례총람』에 기록하였다.<sup>45)</sup> 따라서 건륭제 사망 부고를 가지고 온 칙사를 영접하기 위한 1799년 1월의 행사에서 이서구가 관례를 들어 거부한 일은 당연하지 만<sup>46)</sup>, 같은 해 12월 24일 세자책봉 칙사는 충분히 나례를 거행할 만한 경사임에도 저들이 요청할지라도 나례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조는 밝혔다.<sup>47)</sup> 喪服을 벗기는 했어도 2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라고 정조가 遠接使에게 명하기는 했으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1784년 사건을 기회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산대회 자체를 조정 차원에서는 設行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그 근본적 동기의 하나이다. 그리고 정조의 조치는 이후 불문을처럼 遵行되었다.

그 같은 상황은 저 유명한 「甲申完文」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1824년 8도의 광대들이 모여 인원동원과 관련하여 광대 조직을 정비하면서 관의 허가를 받은 문서이다.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44) 앞서 산대잡회를 폄하하였던 兪晩柱는 『欽英』 5권(규장각 영인본, 1997)에서 12월 초하루에는 밤에 산대회를 구경한 것을 자랑하는 손님을 기록했고(“夕客傳棚觀”, 『欽英』 5, 407쪽), 초사흘에는 당시 서울에서 두 가지 일이 제일 크다고 하고 하나는 칙사를 맞이하는 산대회의 광경이고, 하나는 성균관에서 거행되는 과거시험이라고 할 정도로(“京中止有目下兩事而已. 觀勅棚之光也, 赴泮庠之試也.” 위와 같음.) 산대도 감의 나례가 구경거리로 떠들썩하였음을 전해준다.

45) 邊籟, 앞의 책. 補卷 권1. “儺禮, 別設都監舉行, 而必設於吉禮勅. 故近例則乾隆戊午封典勅·甲辰封典勅, 皆設行. 其後各勅, 皆因彼我國有故, 不爲學論.”

46) 『승정원일기』 1799년 1월 25일 기사. “李書九, 以迎接都監言啓曰: ‘取考膳錄, 則傳訃勅行時, 不設儺禮矣. 今亦不爲設行之意, 償田處分付, 何如?’ 傳曰: ‘允.’”

47) 『승정원일기』 1799년 12월 24일 기사. “上曰: ‘勅行, 雖在除服後, 而既在二十七月之內, 賀表等節, 亦既停止, 則彼雖以宴儺禮爲言, 以此據義防塞, 俾不得更請, 爲好. 遠接使知此舉行, 可也.’”

위 完文은 舉行할 일을 알게 하고자 한 문서이다. 팔도 재인들은 丙子年 이후 칙사 행차에 좌우 산대를 설치하여 거행해야 했으나 [...] 지난 甲辰年 이후로는 좌우 산대를 設行하지 않되, 前例에 실린 칙사 행차 때 [...]」<sup>48)</sup>

그동안 학계에서는 「갑신완문」에 근거하여 산대도감 나례가 완전히 폐지된 시기를 1784년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료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사진실은 ‘임금의 환궁행사로서 나례는 인조 이후에 폐지되었고, 중국 사신을 환영하는 행사로서 나례는 정조 8년(1784)에 폐지되었다. 나례를 폐지한 것은 물자를 징발하고 재인을 동원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여 폐지의 원인을 물자의 징발과 재인 동원의 어려움에 돌렸다.<sup>49)</sup> 제기한 문제가 나례 폐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동기는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탁문한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 사건으로 불거진 산대도감 나례의 여러 폐단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국왕 정조는 아예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탁문한은 산대도감 나례를 폐지하게 만든 장본인의 하나인 셈이다.

탁문한은 마지막 거행된 칙사영접 산대도감 나례의 도변수로서 비록 불미스런 사건으로 중도 하차했으나 마지막 도변수의 지위와 영광을 누린 인물이었다. 탈춤꾼이자 산대도감 조성장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 19세기 전반기에 조수삼과 심능숙에 의해 행적이 비중 있게 서술된 것은 우선 그가 지닌 독보적인 기에 자체에 이유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역사적 위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조선시대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경우, 예술행위가 수준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예술가 자체를 부정적 시선으로 보았다. 탈춤을 비롯한 연희 계통에서는 더욱 자신의

48) 「完文 等狀八道才人」.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을유문화사, 1961), 301-307쪽에서 재인용. “右完文爲知悉舉行事. 八道才人等, 丙子以後, (當)爲勅行而設爲左右山舉行 [...] 去甲辰年以後, 左右山不爲設行是乎乃. 前例所載勅行時, [...].”

49) 사진실, 앞의 책(2002), 348쪽.

이름을 당당하게 내놓을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 본위로 연회를 점검할 때, 이 글에서 살펴본 탁문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그가 정조와 순조 연간의 나례청과 나례에서 막중한 책임을 진 위치에 있었고, 그의 예술이 최고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깊이 분석하는 것은 당시 나례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한 문헌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의 삶과 예술활동을 정확하게 재구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탈춤꾼으로서 그의 실력과 개성, 그리고 검무와 검술 실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의 양인 신분과 관련한 문제는 한두 가지 자료로만 확정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그의 위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대조성 장인으로서, 그리고 방상시와 죽산마 조성의 장인으로서 그의 위상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연회 제작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은 이 논문에서 거의 처음으로 조명되었다. 의문점을 남겨놓는다 해도 이만한 위상과 관련 문헌을 남긴 연회자도 없다. 그와 탈춤꾼 및 제작자에 관한 문헌의 조사와 치밀한 분석은 앞으로도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의궤』.

盧尙樞, 『盧尙樞日記』 4권. 국사편찬위원회, 2004.

邊鎬, 『儀禮總覽』. 규장각 소장 활자본, 1819.

徐宗華, 『藥軒遺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沈能淑, 『後吾知可』. 필사본, 개인소장.

阿克敦 編繪, 『奉使圖』. 北京民族圖書館藏, 遼寧民族出版社, 1999.

御營廳, 『御營廳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필사본.

柳得恭, 『京都雜誌』. 朝鮮古書刊行會, 활인본, 1910.

俞晚柱, 『欽英』. 규장각자료총서,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李瀾,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

趙秀三, 『秋齋集』 4책. 寶晉齋 刊本, 1939.

趙秀三 지, 安大會 옮김, 『추재기이』. 한겨레출판, 2010.

訓練都監, 『訓局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필사본.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종철, 『관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사진실, 『한국연극사연구』. 태학사, 1997.

\_\_\_\_\_,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_\_\_\_\_, 「광막한 천지에 부는 바람 같은 사내, 광대 달문」.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164-183쪽.

손태도, 「본산대 탈놀이패에 대한 시각」. 『고전희곡연구』 제4집, 2002. 135-177쪽.

\_\_\_\_\_, 『광대의 가창문화』. 집문당, 2003.

안대회, 『고전산문산책』. 휴머니스트, 2008.

\_\_\_\_\_,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한겨레출판, 2010.

이호승,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 양상」. 『공연문화연구』 제14집, 2007, 387-426쪽.

전경욱,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88.

\_\_\_\_\_,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2004.

차충환, 「상하 경향을 아우른 휴머니즘과 자유인의 형상, 달문」. 김진영 외, 『조선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 보고서, 2007, 128-154쪽.

##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탈춤꾼과 山臺造成匠人으로 활약한 卓文漢이라는 藝人을 발굴하여 그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주로 천민이 담당하였기에 대중 예술가의 생애와 활동은 거의 보고된 자료가 없다. 趙秀三의 『秋齋紀異』와 沈能淑의 「卓文漢紀實」, 그리고 각종 儀軌와 정부 관련 사료를 조사하여 탁문한의 생애를 재구성하였다. 탁문한은 漢陽의 良民으로 직업군인 가정 출신이었다. 그 자신도 軍營에 소속되어 빼어난 검술실력을 소유한 무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천민들이 말던 연희에 두각을 나타내 최고의 춤꾼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탈춤꾼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山臺都監에 소속되어 국가적인 연희에 都邊首로 활동하였다. 儺禮와 관련한 각종 국가행사에서 그는 무대장치인 山臺를 비롯하여 도구를 만드는 일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는 1784년 勅使를 영접하기 위해 50년 만에 設行된 나례에서 都邊首로 책임을 졌다가 연이은 사건과 비리로 인해 正祖로부터 문책을 당해 6년 동안 유배를 살았다.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 국가적인 나례의 設行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설행된 나례의 책임자로 기억되었다. 그 이후에도 국왕의 장례행사에서 방상시와 竹散馬를 조성하는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투고일** 2010. 9. 20.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9.

**주제어(keyword)** 탁문한(Tak Munhan), 산대도감(Mask drama association), 도변수(Dobyeonsu), 방상시(Bangsangsi), 탈춤(Mask dancing)